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231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우리카드

2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◦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상 '약관보고 의무 위반'으로 과태료 1,200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기 관

1. 약관보고 의무 위반

◦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*(금융약관)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장에 보고** 하여야 하는데도

* 명칭·형태·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함(「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」 제2조 제1호)

** 본건 약관은 공정위가 유사한 내용의 근보증서를 표준약관으로 게시중인 점, '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, 방식, 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'가 아닌 점 등 감안시 사후보고 대상

- 우리카드는 ㉮ 약관 및 ㉯ 약관을 각각 제정(20xx.xx.xx., 20xx.xx.xx.)한 후 1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54조의3, 제69조의2
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 제19조의22, 제23조의3